

법전·관서지로 살펴본 19세기의 형조-『추관지』·『육전조례』를 중심으로

조윤선/200327

I. 19세기 법사 연구의 시작과 논점

1. 형조 연구의 필요성과 기본 자료

형조는 조선시대 삼법사의 하나이고, 대표적인 사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형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¹⁾ 형조 기관의 조직, 업무, 소속 관원, 속사 등 기본적인 업무의 정리가 필요함.

『추관지』는 형조의 관서지로 형조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종래 『추관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형조에 대해 살핀 연구는 없는 형편.²⁾ 따라서 『추관지』를 기본 자료로 형조 분석해야 함.³⁾

『육전조례』는 19세기의 상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법전. 거의 증보된 조문이 없는 『대전회통』에 비해 많은 조례가 실려 있고, 특히 4사 9방의 구성원이나 분장 업무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등 19세기 형조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는 『육전조례』 검토가 필수.

즉, 『경국대전』에서 『대전회통』까지는 형조 업무의 개요와 관원 구성 정도가 정리되어 있다면 『추관지』와 『육전조례』는 법전의 조문 외에 형조 職掌이나 屬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고, 재정 구조도 살필 수 있어서 이 두 자료를 반드시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함.

『추관지』가 18세기까지 형조 관련 규정의 종합 정리라면 『육전조례』는 19세기까지 형조의 조례를 다루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연결되며, 이 두 자료를 비교, 검토하면 형조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에서 『대전회통』에 이르기까지 형조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추관지』를 통해 18세기까지 정리된 형조의 상황과 그 이후 19세기까지 찾아지는 변화상을 『육전조례』를 통해 살피고 비교함.

형조의 위상이나 구체적 업무 실상 등은 실제적으로 『승정원일기』, 실록, 『심리록』이나 『소단서(小丹書)』⁴⁾ 등 형정 실무서나 판례집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법전, 관서지 상 확인되는 형조 관련 기본 법규를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려 함

1) 『조선시대사법제도연구』(오갑균, 삼영사, 1995) 3장에서 형조를 다루고 있고, 형조와 전옥서, 보민사 관련 논문이 있는 정도(조윤선, 「朝鮮後期 刑曹와 典獄署의 構造와 業務」, 『법제연구』 24, 한국법제연구원, 2003/ 조윤선, 「17, 18세기 형조의 재원과 보민사_속전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4, 2003/ 조윤선, 「조선시대 전옥서의 위치」, 고전산책 고전산문, 한국고전번역원, 2017년 10월 2일)

2) 『추관지』를 통해 살옥, 옥안, 사회상 등을 살핀 연구는 있으나 형조 자체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문현아, 「판결문 내용분석을 통한 조선후기 아내살해 사건의 재해석; 『추관지(秋官志)』 사례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13, 2011

최수자, 「『秋官志』를 통해 본 조선후기의 사회상에 대한 고찰-『秋官志』의 獄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연정렬, 「秋官志에 關한 一研究; 聽訟을 中心으로」, 『논문집』 제9집, 한성대학, 1985

3) 『추관지』 재번역 필요.

4) 1846(현종12)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 1책(117장), 범죄인 처벌 사례, 내용 등을 기록한 것으로 실무자 용 형법서로 보인다.

2. 조선시대 사법기관의 정의

조선은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체제상의 특징을 전제로 할 때, 조선시대 사법 기관에 대한 정의나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보통 조선시대 法司로 刑曹·司憲府·漢城府 등 三法司를 든다.⁵⁾ 삼법사는 형조, 사헌부, 한성부라고 기록되어 있는 『속대전』 금제조⁶⁾를 근거로 조선시대 법사는 삼법사에 국한 된 것으로 인식해 온 듯하다.

그러나 실제 『속대전』 금제조에서 말하는 삼법사는 出禁 규정을 어겼을 경우 이를 담당하는 관사이다. 『승정원일기』등의 사료에서도 삼법사는 주로 出禁, 賦錢, 禁亂, 徵賊 등의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다.⁷⁾ 三法司가 어느 관사인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것⁸⁾도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인 듯. 조선시대 법사의 정의처럼 인식되어 온 형조, 사헌부, 한성부 삼법사는 대부분 출금, 금령, 속전 등을 담당하는 법사로서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세 법사 외에 의금부, 포도청 등도 법사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관사들이 어떤 점에서, 어떤 위치에서 사법 기관에 포함되는가. (포도청의 경우 『추관지』에서 형조의 속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포도청은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포도청이 형조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한편, 이들 관사 외에 법사라고 볼 수 있는 관사는 없는가?

사법기관의 현대적 정의는 ‘국가의 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법을 판단하고 적용한다는 점에서 형조는 사법기관의 조건을 충족 한다. 그런데 법을 판단한다고 할 때는 어느 범죄에 어떤 율이 적합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조율(照律) 과정이 있고, 그 다음 이러한 조율에 대해 형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죄를 용서해주는 실제적인 법 시행 결정의 판단 과정이 있다. 전자는 대부분 형조가 그 중심에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형조보다 상급 기관, 그리고 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특히 19세기 들어서는 비변사를 흡수한 의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사형죄는 물론 그 외 법 적용의 판단에 있어서도 의정부 대신들의 결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사안은 시임, 원임대신이 처리하며, 사안이 매우 위중하다고 생각되면 임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를 지시한다. (처리의 이행은 형조가 하지만..)

5) 삼법사 주석에 예외 없이 달리는 정의; “조선조 때 법을 맡아 다스리던 세 관청. 곧 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한성부(漢城府)를 이르던 말”

6) ○ 三法司 【本曹 司憲府 漢城府】 毋得在家出禁 毋得昏夜出禁 京城禁標外毋得出禁 【亂塵同】 禁條外毋得創出他條 量定時刻毋得踰越 【先以禁條申嚴飭勵後 出禁每朔六次 四時名節竝弛禁】 禁吏憑依橫拿者杖一百 【假稱禁吏閭里作挾者 論以遠配之律《增》 三法司木牌外加作紙牌一切嚴禁】 (《續大典 刑典 禁制》)

7) 유수원은 『우서』에서 형조, 사헌부가 금란에 간섭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았다.(“今之所謂三司禁亂 駭怪莫甚 刑曹憲府 有何干涉於此等法禁哉” 《迂書 5권 論兩司合行職務事宜》)

8) 삼법사에 의금부(義禁府)와 장례원(掌隸院)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以此分付政院 摶庭署 京兆五部 三法司 三軍門 捕廳 幷令書揭壁上 常常在目”《순조실록 22년 9월 1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정부를 사법기관으로 보지는 않는다. 사법 기관 연구에서 의정부는 논외로 해야 하나? 19세기 전체 행정기구 속에서 사법 기관을 분리할 수 있으며, 사법 기관만의 연구가 가능한가? 19세기 전체 행정기구 속에서 형조를 비롯한 기타 사법 기관과의 유기적 연구로 범위가 넓혀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각 사법 기관의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 간의 문제의식이나 과제로 생각되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듯.

3. 형조와 기타 사법 기관 연구와의 공조, 역할 분담 문제

형조와 사헌부, 한성부, 의금부, 포도청 등 기타 사법 기관과의 관계, 공조, 업무 분장 등에 있어서 다른 연구자와 연구 과제, 연구 범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 ※ 금제나 금법, 도성안의 치안이나 기강 확립, 청송에 있어서 한성부가 제1심이면 형조가 제2심으로 청리하는 등 한성부와의 업무 중복⁹⁾
- ※ 포도청과 형조의 업무 중복¹⁰⁾
- ※ 추국에 형조 관원 참여 등 의금부와 형조의 관계
- ※ 사헌부 推緘을 刑曹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등 사헌부와의 관계¹¹⁾

사법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형조 외 사법기관이 형정 처리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연구자들 간의 유기적 협업이나 역할 분담, 연구 주제, 소재 등의 조정, 문제 처리 방식 등에 대해 논의 필요.

II. 본 형조 연구의 주제와 구성

1. 형조의 연혁과 위치, 구조

○신라에서는 議方, 백제에서는 佐平, 고려는 典法이라고 불렸고 조선에 와서 형조로 정해

9) 도하에서 도살하는 폐단 형조와 한성부에서 관리

형조와 한성부, 포도청은 도살 적발 직책, 지방은 監司와 수령들이 책임

10) 체포, 구금은 형조, 한성부, 좌우포청에서 할 수 있는데 대상이 유생이면 포도청에서 다를 수 없다. 유학이면 형조에서 처리함 (조율은 임금이 하는 경우 많음) 그러나 왕이 유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즉 유생이라 할 수 없는 무뢰배라고 보고 체포하도록 하교를 내리기도 한다.

포도청에서는 포악이나 도둑에 관련된 죄인을 체포하며, 만약 조관을 체포하였다면 포도대장 간삭.

도성 조정관원과 양반집을 형조에서 엄히 신칙 규찰.

포도청에서 조사 후, 형조로 이관하여 형벌 처리.

포도청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형조 거치지 않고 의정부 직권으로 석방이나 처리 여부 결정

11) ○凡京外官推考 各其司直捧公緘照律始啓 【奉傳旨推考 則勿拘傳旨 須原情取招 ○凡推考緘答在京官人三度抗拒後 收職牒進來推考 又不遲晚 則啓請刑推 外邑守令三度抗拒 則啓請刑推 竝移義禁府處置 ○司憲府推緘 捧傳旨後 過三十日未勘者 移送本曹照勘 《增》宗親儀賓文蔭武正一品不得推考 亦勿捧緘辭】 (《續大典 刑典 推斷》)

졌다. 정2품의 관청. 법, 상언, 노예에 관한 정사 관장.
(의형, 형조 ; 고종 31년 법무아문으로 고침)

○ 관사, 속사의 위치 및 구조 → 형조, 조방(朝房), 윤학청(律學廳), 전옥서(典獄署)의 위치, 건물의 구성, 구조 등

서부 적선방, 즉 경복궁 광화문의 오른쪽. 북쪽에는 병조, 남쪽에는 공조, 동쪽에는 대로, 서쪽에는 윤학청, 사역원

문밖에는 못쓰게 된 우물이 있고, 청사 뒤에는 연못
;조방+윤학청+전옥서

※ 사법 기관 전체의 위치를 구성한 지도 필요할 듯 (연구팀 자체 제작)¹²⁾

2. 관원 구성과 法官·律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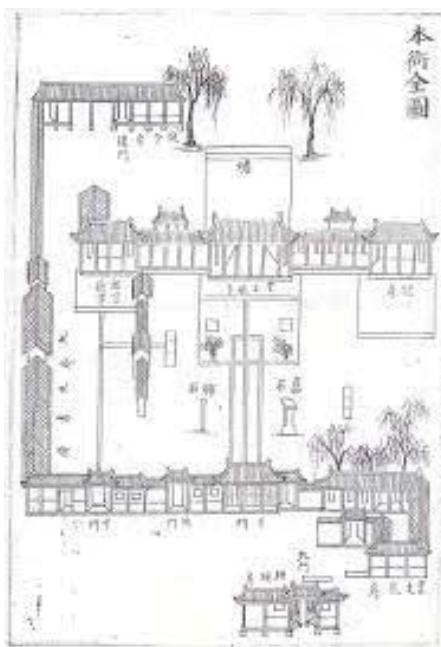
○ 관원 구성→ 판서 1(정2), 참판 1(종2), 참의 1(정3), 정랑 3(정5, 1인은 무관), 좌랑 3(정6, 1인은 문관)

○ 法官과 法官의 차이는?

→ 법률 전문직인 法官과 구별하여 주로 儒學을 공부한 三法司의 관원이나 지방관을 法官이라고도 하였다.(회통주석)

사료에서 율관과 법관은 구분하여 인식되고 있고 율관을 ‘律官輩’라고 칭하기도 함.¹³⁾
율관은 윤학청 소속의 관원을 의미하는 듯 하며¹⁴⁾ 법관은 형조 및 기타 사법 기관의 관원

12)



13) “持平黃紐 以臣前日問於律官 則以爲大典註解 有曰 男曰婚 女曰嫁 則婚嫁留七日之文 是言子息成婚 而自家娶妻 不在其中也 且以法官帶職婚娶者 老吏律官 皆未前聞云,”(승정원일기 인조 3년 10월 24일)/“老吏律官輩~”(승정원일기 인조 3년 10월 23일)

을 지칭한다고 보임.

법관과 율관의 역할·차이, 율관의 신분·전문성, 시험¹⁵⁾ 및 포正因为 사료를 통해 검토해 보려 함

(※ 리서치 결과에 따라 단독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을 듯)¹⁶⁾

3. 직장(職掌)과 업무

○ 형조의 직제는 周官 모방

四司와 각 사사 당 두 개씩의 방에 형방을 더한 九房으로 구성, 사사 구방에서 각각 팔도를 관찰한다. 즉 온 관아의 공문과 팔도의 장첩 논단과 복주 관찰.

○ 사사(四司) 구방(九房)에 대한 『경국대전』, 『추관지』, 『육전조례』의 정보·조문 비교

[詳覆司/詳覆部]

대전	掌詳覆大辟之事	
추 관 지	啓覆	啓覆啓目規式과 이와 관련한 上奏, 傳敎 등 王대별 則
	附檢驗	初檢甘結規式, 覆檢移關規式, 初檢規式, 京司檢驗, 京司檢驗新定事目, 檢驗雜式十二則, 壽限加定三則
	附同推	관련 上奏, 傳敎 등 王대별 則
	附訊杖	관련 上奏, 傳敎 등 王대별 則
		釐正刑具, 釐正棍制
	倫常	三省推治式二則, 爳父, 爳母, 犬父母, 爳夫, 奴殺主, 殺妻, 殺子婦, 殺弟, 殺姉妹女外孫女, 殺兄嫂姪婦, 殺從兄弟侄, 倫紀 항목별 관련 獄案
	復讐	復父讐, 復母讐, 復夫讐, 復兄讐, 復子女讐 항목별 관련 獄案
	奸淫	因奸殺妻, 因奸殺人, 淫獄 항목별 관련 獄案
	審理上	왕대별 則과 獄案
	審理中	獄案
	審理下	獄案
	附欽恤	왕대별 則
	除律	除刑, 禁刑, 輕刑
상 1	掌外詳覆	
	句	의정부, 중추부, 사옹원, 사복시, 선공감, 종학, 북부, 남부, 현릉, 희릉, 효릉, 함경

14) 【刑曹】 《原》 律學四十 《續》 加四十 (《大典通編 禮典 生徒》)
律員은 法律에 관한 일을 맡은 官員으로서 刑曹에 律學教授와 別提兼教授 및 明律·審律·律學訓導·檢律 등이 있고 各道와 濟州에 檢律 각 1명씩 있다.

【奎章閣】 【增】 檢律 1인은 9품으로 하고 刑曹의 檢律로서 待令하게 한다.

15) 【律科初試】 《原》 【額數】 十八人 刑曹錄名試取 《續》 式年·增廣同 大增廣則加四人
【講書】 大明律 背講 唐律疏議·無冤錄·律學解頤·律學辨疑·經國大典 臨文

《續》 大明律 背誦 無冤錄·經國大典 臨文 其餘諸書今廢 《續》 刑曹堂上官一員或二·三員 同刑曹郎官一員·律官一員 該曹差定試取 (禮典 諸科 律科初試)

【律科覆試】 《原》 【額數】 九人 本曹同刑曹堂上官錄名試取 《續》 式年·增廣同 大增廣則 加二人 【講書】 同初試 ○ 《續》 刑曹堂上官一員 <三望> 同刑曹郎官一員·律官一員試取 (禮典 諸科 律科覆試)

16) 관련 주제어 원문 검색 자료 건수(승정원일기/실록 건수)
律官(524/111), 法官(890/497), (법관·율관 동시 검색 26/7), 律員(2/10), 律學教授 (154/3), 律學兼教授(4/0), 律學生徒(8/9), 律科(568/602), 律學廳(0/7) 등~

	방	管	도
	상	掌	京詳覆
	2 방	句 管	종친부, 도총부, 예문관, 종부사, 전의감, 혜민서, 의영고, 남학, 호위청, 실록청, 국장도감, 목릉, 강릉, 승릉, 개성부, 강화부, 경기도
육전	掌詳覆大辟之事 ○一房判書勾管二房郎廳兼察掌外道詳覆及分掌各司【議政府中樞府司饔院司僕寺繕工監中學南部北部顯陵禧陵孝陵咸鏡道】 二房佐郎一員勾管掌京內詳覆及分掌各司【宗親府都摠府藝文館典醫監惠民署義盈庫南學扈衛廳實錄廳國葬都監穆陵康陵崇陵開城府江華府水原府廣州府京畿】		
	詳覆大辟 8개 조문		
	審理 2개 조문		

[考律司/考律部]

대전	掌律令按覈之事		
추관자	定制	大軍籍事目, 改定徙邊事目, 戶籍事目, 號牌事目	
	續條一	郎官, 開坐, 律官, 本曹推斷	
	續條二	罪囚, 徒流, 放赦	
	續條三	科場, 竊盜	
	續條四	濫刑, 私門用刑, 犯分, 犯越 관련 사항과 則	
	續條五	聽訟, 山訟, 上納, 軍務, 還上, 犯贓, 徵債, 錢貨, 銀銅, 蔴貨, 商賈	
	續條六	宮衛, 城闈, 寢廟, 陵園, 祭享, 位版, 宮掖	
	續條七	寶印, 符牌, 制書, 聖曆, 鐘鼓, 烽火, 音樂, 殿牌, 郵牧, 宮房, 學校 관련 사항과 則	
	雜犯	事係綱常, 毆傷, 謗陷, 假稱, 偷弄, 詐偽, 放火, 墳山作變, 賣買, 冒稱, 犯奸, 神主作變, 鄉民武斷, 奴主, 租稅, 獄囚	
고	掌律令		
	1 방	句 管	호조, 총훈부, 돈녕부, 기로소, 내의원, 선혜청, 상평창, 대동청, 수어청, 봉상시, 사도시, 예빈시, 조지서, 선릉, 정릉, 강원도
	掌律令		
	2 방	句 管	비변사, 시강원, 독서당, 교서관, 평시서, 사재감, 중부, 내농포, 액정서, 남별전, 산릉도감, 현릉, 草陵, 長陵, 순회묘, 소현묘, 중정도
육전	掌律令按覈之事 ○一房正郎一員句管分掌各司【戶曹忠勳府敦寧府耆老所內醫院宣惠廳常平倉大同廳奉常寺司橐寺禮賓寺造紙署宣陵靖陵江原道】 二房叅判句管正郎一員兼察分掌各司【侍講院讀書堂校書館平市署司宰監中部內農圃掖庭署永禧殿均役廳山陵都監獻陵章陵長陵順懷墓昭顯墓公忠道】		
	律令 46개 조문		
	擊錚 1개 조문		
	聽訟 4개 조문		
	按覈 1개 조문		

[掌禁司/掌禁部]

대전	掌刑獄禁令之事		
추관자	掌 刑 獄 禁 令	法禁	法禁, 牛馬屠殺, 會飲騎馬二則, 紙鞋, 亂塵五則, 高重二則, 巫覲三則, 僧尼十一則, 酒禁七則, 禁邪學
	申章	用牌, 家舍, 奢侈, 親屬詞證, 囚禁, 推治	
	雜令	麗陵, 禁養, 苑囿, 折受, 朝制, 僮猥, 貢市, 文簿, 請囑, 匿名書, 雜戲二則, 夜禁四則, 曳船軍	

	금	掌刑獄禁令
1	句	공조, 의빈부, 사헌부, 총융청, 상의원, 전설사, 내자시, 활인서, 장원서, 빙고, 누국서, 동부, 서학, 장생전, 연접도감, 건원릉, 정릉, 태릉, 경상도
방	管	
	금	掌刑獄禁令
2	句	병조, 승정원, 금위영, 좌우포청, 좌우순청, 위장소, 강서원, 군기시, 내섬
방	管	시, 장흥고, 정생서, 사직서, 종묘서, 서부, 제릉, 후릉, 영릉, 평안도
육전		掌刑獄禁令之事 ○一房正郎一員勾管分掌各司【工曹儀賓府司憲府摠戎廳尙衣院典設司內資寺活人署掌苑署冰庫漏局署東部西學長生殿迎接都監健元陵貞陵恭陵慶尚道】二房佐郎一員勾管分掌各司【兵曹承政院禁衛營左右捕盜廳左右巡廳衛將所講書院軍器寺內贍寺長興庫典牲署社稷署宗廟署西部齊陵厚陵英陵平安道】
	刑獄 3개 조문	
	檢驗 11개 조문	
	刑具 6개 조문	
	禁令 3개 조문	
	禁刑 2개 조문	

[掌隸司/掌隸部]

대전	掌奴隸簿籍及俘囚等事	
추관지	掌	公隸 奴婢查正, 奴婢辨正, 辛亥事目, 公賤推刷七則, 寺奴查正
	奴	所生 良妻所生, 定屬救活婢所生
	隸	收貢 奴婢減貢三則, 奴婢收貢
	俘	官婢 官婢率畜六則, 邑婢潛奸二則
	囚	免賤 免賤三則, 公賤物故立案二則, 賦良後出補充隊, 官婢免賤二則
	簿	嘉禮都監, 進宴都監, 延接都監, 禮葬都監, 天童軍, 各年天童軍, 祈雨童子軍, 牛毛軍, 童便軍, 四囊散軍, 龍虎水散軍, 假水工, 女囚直, 守僕抄擇, 別監抄擇, 籍沒奴婢
	籍	附斜付 私賤 奴婢, 買賣奴婢, 賦奴婢, 屬公, 奴主, 奴婢作紙二則
	예	私賤 掌外奴隸
	1	句 예조, 의금부, 훈련도감, 어영청, 사간원, 장악원, 통례원, 사역원, 관상감, 군자감, 광흥창, 사포서, 창릉, 경릉, 전라도
	방	管
	2	句 이조, 한성부, 홍문관, 성균관, 승문원, 제용감, 와서, 내수사, 예장도감, 나례청, 광릉, 순릉, 공릉, 익릉, 황해도
	방	管
육전		掌奴隸簿籍及俘囚等事 ○一房掌外奴婢正郎一員勾管分掌各司【禮曹義禁府訓鍊都監御營廳司諫院掌樂院通禮院司譯院觀象監軍資監廣興倉司圃署昌陵敬陵全羅道】二房掌內奴婢佐郎一員勾管分掌各司【吏曹漢城府弘文館成均館承文院濟用監瓦署內需司禮葬都監光陵恭陵順陵翼陵黃海道】
		奴隸符籍 8개 조문

[刑房]

대전	掌禁亂罪囚	
추관지	句	상서원, 전옥서, 규장각, 이문원, 준천사, 가례도감, 동학, 책례도감, 빈전 도감, 부례도감, 장릉, 사릉, 온릉, 휘릉, 영릉, 명릉, 의릉, 혜릉, 흥릉, 원 릉, 영릉, 순강원, 소녕원, 현릉원, 수길원, 인숙묘, 민희묘, 의소묘, 효창 묘
	管	

육전	叅議勾管曹司佐郎兼察分掌各司【尙瑞院典獄署奎章閣濬川司景慕宮東學嘉禮都監冊禮都監殯殿都監祔禮都監輿士廳莊陵思陵溫陵徽陵寧陵明陵懿陵惠陵弘陵元陵永陵健陵仁陵綏陵景陵睿陵順康園昭寧園顯隆園綏吉園徽慶園愍懷墓懿昭墓】
	犯越 3개 조문 ※ 총례, 응입, 용하

사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복사와 고율사이다. 상복사에서 형조의 주 업무인 형옥 사건의 조사, 형벌 집행 등을 담당하고, 고율사에서 율령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영인본 분량으로 보아도 상복사(646쪽)와 고율사(742쪽)는 장금사(161쪽), 장례사(92쪽)에 비해 월등히 비중이 높다. 따라서 형조는 상복사의 형옥, 고율사의 율령 업무가 가장 주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형조가 가지는 의의는 『朝鮮經國典』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後序에서 형전은 육전의 하나이지만 나머지 다섯 전이 형전에 의해서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전의 출척에 있어서 선별을 공정하게 하는 것, 호전의 징렴에서 표준을 균등히 하는 것, 예전의 절문에서 의례를 공경히 하는 것, 병전의 호령에 있어서 군사에게 위엄을 주는 것, 공전의 흥작에 있어서 노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은 모두 형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¹⁷⁾

즉 관리의 선발이나 출척, 조세의 균등한 징수, 의례를 공경하게 치르는 일, 군대의 지휘 명령에 있어서의 위엄을 보이는 일, 국가적인 건설 작업에 있어서 노력의 절감 등 이전, 호전, 예전, 병전, 공전 등의 일을 법도에 맞게 하기 위한 일을 형전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형벌 관련 업무 외에 국가 시스템의 운영, 감시, 강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의 모든 제도가 공정하고 법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정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형조의 의의가 있다.

(형조의 실제 업무 중 일반 형정 외 국가 제도나 관원 등의 관리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사료의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함

실제 탐관오리 가렴주구 징벌하고 횡령한 돈을 받아내는 일,¹⁸⁾ 세곡 징수하지 못한 관리 처벌, 사전 주조 죄인 처리 등은 실제 형조 업무 중 매우 비중 있는 부분.)

그러나 일단 『추관지』에 규정된 형조의 업무는 原情에 따라 죄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啓覆을 첫 번째에 다루었으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감형과 감율이므로 除律로 그 다음에 두었다. 즉 형조의 가장 큰 임무는 계복이며 그 다음이 『추관지』 후반에 이어지는 法禁과 公隸가 형조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정의 처벌이나 전국의 소송 등은 형조에서 진술서를 받아 관원에 관한 것은 의금부로, 절도 관련은 포도청으로, 전민 관련은 한성부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형조에서 원고, 피고의 정상과 증거를 조사한 뒤에 율관이 법에 따라 처단하였다. 즉 각종 소송사건과 처벌건 중

17) “臣又按憲者 六典之一 而五者莫不資是以有成 故吏典之黜陟 非憲則無以公其選 戶典之徵斂 非憲則無以均其法 禮典之節度 非憲則無以肅其儀 政典之號令 非憲則無以威其衆 《三峯集 朝鮮經國典 下 憲典 後序》

18) 감사의 횡령액을 형조에서 받아내어 감영에 다시 돌려보내는 일 등..

형조에서 다루어야 하는 건 외에, 사안에 따라 관할 부서로 옮기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 형조는 법사로써 일반 범죄를 처리하고 죄인을 체포 구금 형문하고, 조율하여 처리하는 일이 기본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조율단계에서 계를 올리면 의정부에서, 또는 시원임대신들이 조율, 처리를 변경하여 할 수도 있고, 더 중한 사안이면 임금이 직접 조율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죄질의 정도에 따라 몇 차례 엄형, 원악도 정배, 물간사전 여부를 결정하여 지시하면 이행은 형조에서 한다.

형조에서는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인지를 살피고, 형 집행을 정지해야 할 때이면 그에 따르면, 임금이 원악도로 보내라는 명이 내리면 각 죄인을 정배 보낼 배소로 원악지를 정해 집행한다.

형조는 주로 형장 집행하고 정배지 정하여 정배 보내는 일이 주 임무

군율이 적용되는 군졸일 경우, 해당 군영에서 嚴棍, 周牢 후 형조에 이송하면 형조에서 엄형, 귀양 보냄

서학(西學) 관련 죄인들의 처벌, 서원 복구 상소 유생의 처벌 등은 19세기 형조의 시대적 특징

4. 屬司_律學廳과 典獄署

경국대전	屬衙門(掌隸院)典獄署《增》掌隸院今革	
	典獄署	掌獄囚 (吏典 京官職 從六品衙門)
추관지	律學廳, 典獄署, 掌隸院, 保民司, 左右捕廳, 左右巡廳	
육전조례	附律學廳	

※ 『육전조례』에서 전옥서는 형조, 의금부와 나란히 독립항목으로 등재
19세기 사법 관사로서의 전옥서의 위치나 기능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

5. 형조의 재정

○ 월봉은 금전, 세비는 미두로 지급
○ 『추관지』→ 보민사 관련 기사와 형조, 한성부 원역의 요포, 전옥서 이예의 늄포, 중기(重記) 기록, 노비공 징수 기록 분석

『육전조례』→ 형조의 응입(應入), 용하(用下) 조 분석
; 19세기 형조의 재정 구조와 관원의 월봉 액수, 원역와 이예 늄료 조달의 시스템 정리
(『추관지』分俵 기록과 비교하여 항목, 액수 등 차이점 정리)

○ 노비; 형조 사역노비, 형조에서 노비공 징수하는 내외노비, 각사노비, 경외노비속안

기타

○ 제반 의식과 서식

→ 지영식, 공례식, 청좌식, 사례식, 포폄식, 입직식, 청전교식, 적간식, 발패식, 녹계식, 예목식, 복제급가식, 낭관청현, 범월죄인추핵식, 구방거행, 계목식, 초기식, 초관식, 정서첩정식, 시사탈품식 등 각종 의식에 형인 관원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형인 업무상 필요한 각종 서식은 어떤 것인지 살펴봄